

# 남해게스트하우스 관리 규정

제정 2014. 3. 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남해게스트하우스(이하 “게스트하우스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목적)** 게스트하우스는 교직원과 학생 및 교육기관종사자들의 정신문화교류 및 수련의 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게스트하우스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408 일대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게스트하우스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교직원, 학생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정신함양 및 수련
2. 교직원, 학생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학술 및 문화행사
3. 각종 교육기관 학술모임 등에 시설대여
4. 연수개발 및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운영
5.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
## 제 2 장 직 제

**제5조(원장)** 게스트하우스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게스트하우스 규정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6조(사무직원)**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직원 약간명을 둔다.

**제7조(업무분담)** 게스트하우스 운영직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문서의 수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
4. 비품 및 소모품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
5.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 3 장 시설의 이용

제8조(시설사용절차 등) 게스트하우스 시설의 사용절차 및 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### 제 4 장 재 정

제9조(회계 연도) 게스트하우스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0조(장부유지 및 물품관리) 1. 원장은 게스트하우스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한다.  
2. 원장은 게스트하우스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한다.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